

국립 한밭대학교의 공간비용채산제 도입 현황

The Space Charging System of Hanbat National University

송 복 섭*

Shong, Bok-Shub

1. 추진배경과 목적

한밭대학교의 교육시설은 학생 1인당 보유면적이 20.4m²로 국립산업대학교 중 시설여건이 가장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별 또는 교수 개인별 불공정한 공간 사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며 구성원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신생학과와 신입 교수에 대한 공간배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연구의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가용공간 부족현상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교수 연구성과에 대한 강조와 무한경쟁속 대학 특성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화하고 있는 각종 연구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수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필요한 공간 사용은 이에 따른 과도한 공공요금 지출로 이어져 대학재정의 운용에도 부담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시설 공간관리에 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규정과 관리조직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대학 공간에 대한 공개념을 확립하며, 새로운 시설 수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특성화와 연계함으로써 대학혁신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밭대학교 실정에 맞는 공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간비용채산제를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과정

2007년 1월 '공간비용채산제 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경

* 정희원, 한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조교수, 건축학 박사

상대, 경북대, 서울산업대 등 공간비용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서울산업대를 방문하여 추진과정의 어려운 점과 제도 운용상의 경험 등을 청취하였다.

공간비용채산제를 도입·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의 사용주체별 공간사용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함에 따라 공간사용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부서별로 공간사용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그 내용이 실제 사용현황과 일치하는지 실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위원회는 여러 면에서 성격이 비슷한 서울산업대의 기준을 참조하여 한밭대학교 공간비용채산제안을 작성, 2007년 5월 보고하였다. 연구위원회안에는 공간관리의 기본원칙과 공간관리 방법, 공간배정기준, 공간초과사용부담과 납부방법, 공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관한 제안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곧 교육인적자원부 정책과제로 국가 수준의 공간배정 지침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보고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을 준용하자는 의견이 접수된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보고서안을 기초로 하고 한밭대학교 실정에 부합하는 수정안이 기획홍보처에 의해 작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수준의 공간관리규정안을 제시하고 사용주체별 공간 배정 면적 표준안과 공간비용채산제 운영안을 마련하여 대학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작성한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한밭대학교 공간비용채산제안을 작성하는데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한밭대학교에 적용하기에 비현실적이라고 판단

되는 기준면적 적용방식과 복잡한 산출방식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취합하기로 하였다. 실험실습실은 교육인적자원부안을 반영할 경우 과도하게 줄어드는 면적을 감안하여 대학설치기준령에 기초했던 연구위원회안을 적용하고, 학과시설과 교수연구실은 복잡한 산출방식 대신 현재 시스템을 적용하여 연구위원회안을 적용하며, 연구용실험실은 100% 유료화하는 연구위원회안 대신 21.6㎡의 기준면적을 제공하는 교육인적자원부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에 기획홍보처가 개최한 세미나 ‘공간비용채산제 추진현황 및 전망’에서 공간비용채산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비록 교육인적자원부안이 ‘국가 수준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기준이므로 각 대학에서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 자체 시설 여건과 시설 소요 그리고 교육구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육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수정하여 활용함’을 전제하고 있지만, 수정안이 선택적으로 적용한 기준들이 연구위원회의 안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의견을 방영한 결과이다.

그 결과, 전체적인 틀과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간관리규정안과 공간관리규정시행세칙안을 따르고 부분적인 수정과 해석을 추가하여 한밭대학교 공간관리규정안과 공간관리규정시행세칙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 2008년 4월 기획협력위원회 보고를 거쳐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접수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서가 연구에 기초한 제안일 뿐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준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준이 1970년대의 연구를 참조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전공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학과의 특성이 반영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수연구용 실험실 전공별 1인당 면적 기준과 전공별 실험실습실 공간계수 산정기준이 학과별로 차등 적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따라서 현재는 전공별 실험실습 공간계수의 적용을 학과별 차등에서 대학별 차등으로 대별하는 등 새로운 수정안을 작성하는 중이고, 다시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간비용채산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3. 한밭대학교 공간관리규정안

1) 공간사용의 기본원칙

한밭대학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점유와 사용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공간관리와 관련하여 전공강의 및 실험

실습과목의 주당학생시간수와 전공별 교원현황은 교무처, 시설사용공간의 실태조사는 시설과, 초과공간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는 총무과, 학부(과)별 기준면적 및 초과공간사용료의 산출은 공간활용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각 단과대학 및 부속시설의 점유와 사용 권한을 공간을 관리하기에 적절한 관리주체에게 위임하여 그 공간을 관리하게 한다. 관리주체는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간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건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며,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의 공간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간의 사용을 개방하여야 한다.

특별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배정한 공간은 그 목적이 종료될 경우 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간활용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주체에게 위임한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을 회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2) 공간의 배정

총장은 공간관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주체에게 기본사용면적을 배정한다. 다만, 공간의 부족 또는 건물 구조상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활용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기준에 가감하여 기준면적을 배정할 수 있다.

각 공간별 배정기준 면적의 산출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 교수연구실은 전임교원에게만 적용되며, 21.6㎡를 기준 면적으로 한다.
- (나) 대학원연구실은 풀타임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석사과정 학생은 1인당 5.5㎡, 박사과정 학생은 1인당 11㎡를 기준 면적으로 한다.
- (다) 교수 연구용실험실은 학과별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2인 이상 전임교원이 공동 사용할 경우 그 배수만큼의 면적을 배정할 수 있다(현재 학과별 기준면적에서 대학별 기준면적으로의 수정이 검토되고 있음).
- (라) 전공 강의실은 교양강의 혹은 대학 내 공동 사용하는 강의실 등을 제외한 학부 혹은 학과에 배정된 강의실을 의미하며, 그 기준면적은 주당 학생수당 시간수에 공간계수 0.05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주당 학생수당시간수는 해당과목의 주당강의시간수의 총합으로 한다.

- (마) 전공 실험실습실은 교양 및 공학 기초 실험실습 혹은 대학 내 공동 사용하는 실험실습실 등을 제외한 학부 혹은 학과에 배정된 실험실습실을 의미하며, 그 기준 면적은 준비실 등을 포함하며 주당 실험실습 시간수에 학과별 공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주당 실험실습 시간수는 해당 과목의 주당 전공실험실습시수의 총합으로 한다(현재 학과별 공간계수에서 대학별 공간계수로의 수정이 검토되고 있음).
- (바) 특별교수 연구실은 교환교수, 객원교수(전임교원,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수, BK교수, 누리사업교수는 제외함)의 연구실을 말하며 주당 2일 이상 혹은 6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1인당 21.6㎡를 배정한다.
- (사) BK교수, 누리사업 교수 등 정부 및 기타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수 연구실은 100% 유료화 하며, 초과공간 사용료는 각 사업단에 부과한다.
- (아) 학과시설은 학부(과)행정실, 교수 휴게실 및 회의실, 학과 세미나실, 교육자료실, 학과 컴퓨터실, 전공회의실, 동아리실 등이 포함되며 배정면적 기준은 학과별 학부생 입학정원에 130㎡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자) 공용강의실은 교양강의 혹은 대학 내 공동 사용하는 강의실을 의미하며 그 기준면적은 주당 학생수 강시간수에 공간계수 0.04를 곱하여 산출한다.
- (차) 교양 실험실습실은 교양 및 공학 기초 실험실습 혹은 대학 내 공동 사용하는 실험실습실 등을 말하며, 그 기준면적은 주당 실험실습 수강시간수에 공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물리화학 실험실의 공간계수는 0.17, 컴퓨터 실습실의 공간계수는 0.13으로 한다.
- (카) 단과대학시설은 대학장실, 단과대학 행정실, 교수회의실, 교육자료실, 학생회 자치회실, 대학 기타제실(동아리실 등)이 포함되며 단과대학 교수정원에 3을 곱하여 200㎡을 합한 면적을 배정기준으로 한다.
- (타) 행정사무실을 비롯한 공동사용공간은 비유료화를 원칙으로 하며 기준에 의거 배정하되, 공간활용상황을 고려하여 배정면적을 조정한다.

3) 공간의 초과사용

초과면적 산정은 공간배정 기준면적과 실사용 면적과의

차이로 산출하되, 배정 기준면적을 20%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부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활용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기준에 가감하여 배정면적을 배분할 수 있다. 연간공간초과사용료는 단위면적당 공간초과사용료를 초과사용공간으로 곱하여 산정한다.

- (가) 유료화공간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월 9,000원/㎡를 적용한다.
- (나) 산학협력단 또는 별도 계약을 통해 계약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공간초과사용 부담금의 60-80%를 적용한다. 단, 사용자 선정은 최고가사용료부담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 (다) 공간초과사용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연구비 포함)에서, 부서일 경우에는 부서의 자체 경비로 지불하거나 또는 그 부서의 예산에서 차감한다.
- (라) 공간초과사용부서에 배정예산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그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차감한다. 다만 공간초과사용자의 희망에 의하여 배정예산 차감 대신 따로 자발적인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마) 공간초과사용부담금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단,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며 천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4) 초과공간사용료의 사용

초과공간사용료는 다음에서 정하는 각 주체가 그 배분 비율에 따라 교육 및 연구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한다.

- (가) 사용주체가 속하는 학과 또는 전공 : 1백분의 50
- (나) 사용주체가 속하는 단과대학 또는 단과대학이 없는 학부 : 1백분의 30
- (다) 대학본부 : 1백분의 20

4. 소견

한밭대학교의 공간비용채산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폭이 큰 반응들이 목격되었다. 시설여건이 나은 학과 또는 교수는 이미 배정받은 공간이 당시 대학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공간비용채산제를 통한 공간의 회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간배정 여건이 열악한 학과와 교수는 제도의 빠른 도입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는 공간비용채산제 실시를 통한 공간관리방법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학과별 특성이 고려된 기준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딱히 납득할 만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밭대학교는 학과별 특성이 아니라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차선의 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공간비용채산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학별로 구성원 모두

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배정 기준과 관리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개별 대학차원의 기준마련이 여의치가 않다면 교육당국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공간비용채산제는 무엇보다도 대학구성원의 이해와 협조를 전제로 한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깊은 관심과 좋은 대안이 절실한 때이다. 한밭대학교의 경험이 공간비용채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